

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
- 나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

## 3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일부 개정(2017/4/21개정·2017/5/2시행)

#### 1) 목적

- 배출권시장의 주무관청 변경(환경부→부문별 주무관청) 등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주무관청의 변경 반영(2조 1항 3호, 2조 1항 3호의2)

- 관련법의 배출권 할당업체에 대한 지정·고시 권한이 “환경부장관”에서 “주무관청의 장”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
  - 주무관청의 장(녹색성장법 시행령 26조 8항)이란 농림축산식품부, 산자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장관을 각 지칭
  - 배출권거래법 8조, 9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의 개정내용을 반영

- 근거 고시의 명칭 변경 반영(25조 1항)

- 환경부의 “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”가 환경부의 “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”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
  -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감독에 관한 업무의 주무관청의 변경으로 관련 고시가 제·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
  -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“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(‘16. 6월 고시)”로 이관

\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
## 나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(2017/4/28개정·2017/5/2시행)

### 1) 목적

- 배출권시장의 일반회원(할당 대상업체)과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에게 대한 회원 정보관리의 균형을 확보하고, 배출권 시장운영의 업무절차를 구체화하여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#### 전문회원 가입시 자료 요구(4조 2항)

-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의 회원가입 신청시 거래소는 회원에게 회원의 기업개요, 재무상태 등 기초정보의 제출을 요구
  - 일반회원(할당 대상업체)은 배출권거래법 8조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 지정시 주무관청의 장(농림축산식품부, 산자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 지칭)을 통하여 대상업체의 정보를 관리하지만,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은 회원 가입신청시 별도의 자료 요구가 없었음
  - 일반회원과 전문회원 간 정보관리의 균형을 확보하고, 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요구하는 기초자료 양식(대표자, 주요주주, 설립일자, 납입자본금, 업종 및 주제품, 상시근로자 수 등)을 전문회원 가입신청시 요구

#### 기준가격 산출시 지표 배출권의 지정 명확화(14조 1항 2호 및 3호)

- 직전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을 배출권의 종류에 따라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 별로 지표 배출권을 각각 산출하고, 협의매매 거래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제외
  - 배출권 종류별 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을 각각 산출하고, 협의매매에 의하여 형성된 매매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업무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